

업무협력 양해각서

한국콘텐츠진흥원과 중앙일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
다음과 같이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(목적)

본 협약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중앙일보가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콘텐츠 스타트업 성장 지원 및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협력사항)

양 기관의 상호 협력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1. 중앙일보 DB 등을 활용하는 스타트업 발굴 및 디지털 행사 공동 추진
2. 중앙일보 매체를 활용한 스타트업 및 콘텐츠코리아 랩 홍보 지원 등
3.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하는 스타트업 및 창작자에 대한 중앙일보 후원 및 DB 제공

제 3 조(유효기간)

본 양해각서는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, 양 기관이 서면으로 협약 해지를 요청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계속하여 연장 적용한다.

제 4 조(권리·의무의 승계)

본 양해각서 체결 후 기관의 명칭, 대표자 변경 등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권리의무는 포괄승계 된다.

제 5 조(신의성실의 의무)

양 기관은 본 협약에 따른 협력사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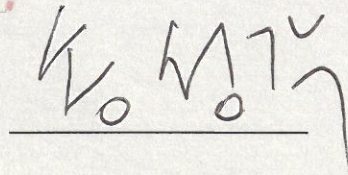
제 6 조(기타)

본 양해각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양 기관은 위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해각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5년 7월 16일

한국콘텐츠진흥원
원장 송성각



중앙일보
대표이사 송필호

